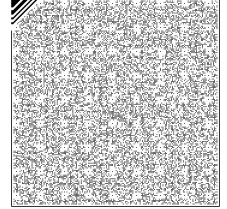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하고<위반시 1천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3.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제때 제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발생사실을 은폐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형사처벌받게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붙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안내 1부.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감독관 **오유아** 행정사무관 **전결 2023.5.17. 임동학**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지도과-4104 (2023. 5. 18.) 접수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오룡동 1110-13 정 / 부광주지방합동청사) 6층 / www.moel.go.kr/gwangju

전화번호 062-975-6394 팩스번호 0508-8230-0588 / kj4506@korea.kr / 대국민 공개